

[별지 제25호의 4 서식] (2016.3.21. 개정)

운용소득 사용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①공익법인명	재단법인 자유기업원	②사업연도	2019.01.01. - 2019.12.31
-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

구분	⑦ 해당 사업연도	⑧ 1년 전 사업연도	⑨ 2년 전 사업연도	⑩ 3년 전 사업연도	⑪ 4년 전 사업연도	⑫ 5년간의 평균 (⑦~⑪의 평균)
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	0	0	0	0	0	0
④사용기준액 () (③× $\frac{\quad}{100}$)	0	0	0	0	0	0
⑤1년내 사용실적	0	0	0	0	0	0
⑥과부족액 (⑤ - ④)	0					0

2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

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	가산액			차감액			
	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	⑮ 기타	⑯ 소계 (⑭+⑮)	⑰ 출연재산 양도차익	⑱ 법인세 등	⑲ 이월결손금	⑳ 소계 (⑰+⑱+⑲)
0	811,771,769	0	811,771,769	0	0	0	0
⑳ 차가감소득 (⑬+⑯-⑳)	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						㉕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(㉑+㉒)
	㉑ 기준미달사용액	㉒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	㉓ 소계 (㉑-㉒)				
811,771,769	0	0	0				811,771,769

작성방법

1.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

- 가. “⑧”란부터 “⑫”란까지는 “⑦해당사업연도”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[“⑥과부족액”란이 음수(-)인 경우를 말합니다]에만 적습니다.
- 나. “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“⑫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다. “④사용기준액”란은 “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.
- 라. “⑤1년내 사용실적”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.
 - (1)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
 - (2)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
 - (3)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※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2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

- 가. “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”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(「법인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- 나. “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”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「법인세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다. “⑮기타”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“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”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(예 :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)을 적습니다.
- 라. “⑰출연재산 양도차익”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.
- 마. “⑱법인세 등”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·주민세·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바. “⑲이월결손금”란은 「법인세법」 제13조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- 사. “⑳기준미달사용액”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,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“⑦해당사업연도”(또는 “⑫5년간의 평균”)란의 “⑥과부족액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(직전 사업연도의 “⑥과부족액”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).
- 아. “㉑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”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